

2025년 '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' 참여기업 모집 공고

혁신적인 사회문제해결 아이디어를 보유한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는 「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」에 참여할 (예비)사회적경제조직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5년 3월 7일
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

1

사업개요

- **사업목적:**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(예비)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
- **지원내용:** 초기 창업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지원

사업비 및 창업공간 지원	특화프로그램 (경기도사회적경제원)	육성프로그램 (운영기관)
(최대 5천만원~최소 1천만원) 시제품(서비스)제작, 시장검증 및 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	(입학식 및 인사이드 트립) 참여기업 간 네트워크, 마스터즈 강연 (경기사회적경제 박람회) 성과 홍보, 투자·판로 개척 (임팩트 쇼케이스) 기업 성과 공유	(월 1~2회 이상)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밀착·전문멘토링 (인사이드 네트워크 런치) 선도기업 네트워킹 (교육·워크샵 등, 총 20시간) 역량강화프로그램 지원

□ 추진체계 및 역할

- (경기도사회적경제원) (예비)창업기업 모집·선정, 사업비 지급, 판로 개척·투자유치·전문가 연계를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
- (운영기관) 밀착멘토링, 창업공간 제공,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

- **협약기간:** 협약일~2025년 12월까지

2

신청자격 및 선정규모

□ **신청자격:** 아래 지원대상 요건 중 하나에 충족하여야 함

□ **선정규모:** 예비트랙 10개사(팀)+성장트랙 30개사 총40개사

구분		지원대상 요건 설명
예비트랙	예비창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(개인, 법인)이 없는 자
성장트랙	공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①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기도 내 창업기업 ■ ②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(2022. 3. 7. ~ 2025. 3. 6.) ■ ③ 경기도 소재 기업(경기도 소재가 아닌 경우 접수마감일 전까지 이전 완료 후 신청) <p>※ 성장트랙 신청 시 공통 조건 ①, ②, ③ 모두 충족 필요</p>
	사회적경제조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「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」 제2조 3항 가~바목에 해당하는 조직
	이종창업 사회적경제조직 진입희망 조직 (非사회적경제 조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①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,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■ ② 「상법」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사회적경제조직을 이종창업하고자 하는 자 <p>☞ 신규 이종창업을 진행해야 하며, 협약기간 종료 전까지 「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」 제 2조 3항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으로의 진입이 가능해야 함 (불가 시,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)</p> <p>* 이종창업 여부: 동 공고문 6. 유의사항 참고</p>
동종유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①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,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개인사업자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동종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■ ② 「상법」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동종유지하고자 하는 자 ■ ③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기도 내 창업기업 <p>※ 조건 ①또는②와 ③충족 필요</p> <p>☞ 협약기간 종료 전까지 「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」 제 2조 3항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으로의 진입이 가능해야 함(불가 시,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)</p>	

※ (참고)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**사업자별 업력산출 기준**

- 개인사업자: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산출

- 법인사업자: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산출

□ 신청 제외 대상

< 신청 제외 대상 내용 >

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
▶ 예외 대상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

1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
2.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,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
3.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

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(기업)

▶ 예외 대상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

1. 「국세징수법」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2.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
③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

▶ 지원제외 대상 업종(대상 업종의 코드번호는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sc.kostat.go.kr) 참고)

1. 일반유희주점업(코드번호세세분류: 56211)
2. 무도유희주점업(코드번호세세분류: 56212)
3.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(코드번호세세분류 : 91249)
4. 그 밖에 1~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

④ 경기도사회적경제원 2025년도 타사업에 선정된 자(기업)

- 타 사업내,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
- 교육, 컨설팅 등 민간사업지원금(자금) 지원 이외의 간접 제공되는 경우 제외

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사업 중 아래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체결 및 사업을 완료했던 이력이 있는 자(기업)

▶ 중복참여 불가 사업

1. (2023년) 임팩트 테마별 액셀러레이팅 사업, R&D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(사업개발비 지원기업)
2. (2024년)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, 사회적경제 도약패키지, R&D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(사업개발비 지원기업)

⑥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」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(기업) 중 '동 사업 접수마감일'을 기준으로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(유사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 협약체결·수행 불가)

▶ 창업사업화 지원사업: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-626호 「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」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'사업화' 유형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자금(시제품 제작비 등)을 (예비)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

※ 지자체 지원사업은 동일아이템·동일비목 사용이 아닐 경우

⑦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(기업)

⑧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(우리은행 사업비 계좌)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(기업)

⑨ 2025년 동 사업 운영기관의 인력 또는 사업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

⑩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
⑪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(기업)

⑫ 기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(예: 사회적물의 발생 등)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* 신청 제외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진단표 제출 필수

□ 지원내용: 사업비 및 밀착멘토링, 특화프로그램, 역량강화프로그램 등

구분	세부 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창업기업 사업비	<p>■ 시제품(서비스) 제작, 사업모델 수립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(공급가 기준) (최대 5천만원~최소 1천만원, 평균 2천만원 내외)</p> <p>< 사업화자금 차등배정(안), 단위 : 원 >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최초 배정</th> <th>중간 배정</th> <th>총합</th> <th>배정기업 수</th> <th>소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S등급</td> <td>30,000,000</td> <td>20,000,000</td> <td>50,000,000</td> <td>1</td> <td>50,000,000</td> </tr> <tr> <td>A등급</td> <td>25,000,000</td> <td>15,000,000</td> <td>40,000,000</td> <td>5</td> <td>200,000,000</td> </tr> <tr> <td>B등급</td> <td>19,000,000</td> <td>12,250,000</td> <td>31,250,000</td> <td>8</td> <td>250,000,000</td> </tr> <tr> <td>C등급</td> <td>13,000,000</td> <td>8,000,000</td> <td>21,000,000</td> <td>10</td> <td>210,000,000</td> </tr> <tr> <td>D등급</td> <td>7,000,000</td> <td>5,000,000</td> <td>12,000,000</td> <td>16</td> <td>192,000,000</td> </tr> <tr> <td>합계</td> <td>94,000,000</td> <td>60,250,000</td> <td>154,250,000</td> <td>40</td> <td>902,000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배정방식 : ① 사업계획서 내 신청금액 범위(최대 3천만원~최소 7백만원) 내에서 대면심사 결과에 따라 1차 사업비 차등 배정 → ② 중간평가(25.7월)를 통해 2차 사업비 차등 배정</p> <p>< 비목·세목 정의 및 기준 >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비목</th> <th>세목</th> <th>정의</th> <th>집행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5">사업모델 개발비</td> <td>사업추진비</td> <td>■ 법인설립 및 정관변경 등 사업화를 위한 지급수수료,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재료비</td> <td>■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구입비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기자재 구입비</td> <td>■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경비</td> <td>총 사업비의 40% 이내</td> </tr> <tr> <td>기자재 임차료</td> <td>■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기자재의 임차, 설치, 운영에 필요한 경비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외주 용역비</td> <td>■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업화 추진에 소요되는 외주 용역비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운영비</td> <td>홍보 및 마케팅비</td> <td>■ 창업기업의 제품·서비스·사업 홍보 및 광고, 홍보채널 운영 및 유지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(소모성 비용)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 운영비</td> <td>■ 일반수용비, 공공요금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여비</td> <td>■ 국내 출장 경비(실비정산 원칙)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활동비</td> <td>■ 창업 활동에 필요한 문헌 구입, 사무용품, 인쇄 및 복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</td> <td>월 30만원 한도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지급방식 : 회계처리기준에 준하여 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 및 운영기관에서 지급주기에 맞춰 집행예정 (①창업기업 금액사전신청 → ②적정성 여부 검토 후 승인 → 교부, 건별 승인 후 지급)</p>	구분	최초 배정	중간 배정	총합	배정기업 수	소계	S등급	30,000,000	20,000,000	50,000,000	1	50,000,000	A등급	25,000,000	15,000,000	40,000,000	5	200,000,000	B등급	19,000,000	12,250,000	31,250,000	8	250,000,000	C등급	13,000,000	8,000,000	21,000,000	10	210,000,000	D등급	7,000,000	5,000,000	12,000,000	16	192,000,000	합계	94,000,000	60,250,000	154,250,000	40	902,000,000	비목	세목	정의	집행기준	사업모델 개발비	사업추진비	■ 법인설립 및 정관변경 등 사업화를 위한 지급수수료,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		재료비	■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구입비		기자재 구입비	■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경비	총 사업비의 40% 이내	기자재 임차료	■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기자재의 임차, 설치, 운영에 필요한 경비		외주 용역비	■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업화 추진에 소요되는 외주 용역비		운영비	홍보 및 마케팅비	■ 창업기업의 제품·서비스·사업 홍보 및 광고, 홍보채널 운영 및 유지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(소모성 비용)		일반 운영비	■ 일반수용비, 공공요금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		여비	■ 국내 출장 경비(실비정산 원칙)			활동비	■ 창업 활동에 필요한 문헌 구입, 사무용품, 인쇄 및 복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	월 30만원 한도
	구분	최초 배정	중간 배정	총합	배정기업 수	소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S등급	30,000,000	20,000,000	50,000,000	1	50,0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A등급	25,000,000	15,000,000	40,000,000	5	200,0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B등급	19,000,000	12,250,000	31,250,000	8	250,0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C등급	13,000,000	8,000,000	21,000,000	10	210,0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D등급	7,000,000	5,000,000	12,000,000	16	192,0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합계	94,000,000	60,250,000	154,250,000	40	902,0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비목	세목	정의	집행기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사업모델 개발비	사업추진비	■ 법인설립 및 정관변경 등 사업화를 위한 지급수수료,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재료비		■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구입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자재 구입비		■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경비	총 사업비의 40%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자재 임차료		■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기자재의 임차, 설치, 운영에 필요한 경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외주 용역비		■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업화 추진에 소요되는 외주 용역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운영비	홍보 및 마케팅비	■ 창업기업의 제품·서비스·사업 홍보 및 광고, 홍보채널 운영 및 유지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(소모성 비용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일반 운영비	■ 일반수용비, 공공요금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여비	■ 국내 출장 경비(실비정산 원칙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활동비	■ 창업 활동에 필요한 문헌 구입, 사무용품, 인쇄 및 복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	월 30만원 한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* 선정자 대상 회계처리기준 별도 교육·안내 예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특화 프로그램	<p>■ 네트워킹 및 협업기회 제공 등 특화프로그램 제공</p> <p>* (세부프로그램) 입학식 및 인사이트 트립, 경기사회적경제박람회, 임팩트 쇼케이스 등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역량강화 프로그램	<p>■ 운영기관별 특장점이 반영된 교육 등 역량강화프로그램 제공(20시간 참여 필수)</p> <p>* (세부프로그램) 디자인씽킹 워크샵, 비즈니스모델 분석 및 혁신 워크샵 등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자원연계	<p>■ 선·후배기업-창업기획자(AC)-투자기관(VC)의 미팅기회 제공</p> <p>* (프로그램명) 인사이트 네트워크 런치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밀착 멘토링	<p>■ 기업별 담임멘토를 배정하여 사업모델 구축 지원을 위한 밀착멘토링 제공</p> <p>* (제공횟수) 협약기간 내 월 1~2회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 멘토링	<p>■ 분야별(인사·노무·특허 등) 전문멘토 연계를 통한 애로사항 해결 지원</p> <p>* (제공횟수) 협약기간 내 3회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간제공	<p>■ 권역별(경기 북부·남부) 창업전용 공간 제공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4

신청 및 접수

□ 신청·접수 기간: **2025. 3. 7.(금) ~ 3. 28.(금) 16시까지**

□ 신청방법: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홈페이지(www.gsic.or.kr) 온라인 신청·접수

* 온라인 신청 방법 '별첨. 자주 묻는 질문' 참고

□ 제출서류

연번	서류명	예비트랙	성장트랙	제출방법	비고
1	참여요건 자가진단표		제출필요	각각 분리하여, 저장 후 압축하여, & 1. 사업신청서 탭에 업로드	5. 심사 및 선정 참고
2	사업신청서 및 계획서		제출필요		
3	가점 증빙서류		해당시 제출		
4	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		해당시 제출	각각 분리하여, 저장 후 압축하여, & 2. 동의서 탭에 업로드	또는 사업자등록 사실여부
5	창업기업 사업 신청 협약서		제출필요		
6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	제출필요		
7	대표자 총사업자등록내역		제출필요		
8	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X	제출필요		
9	기업의 범위반 사실(부존재) 여부 협약서	X	제출필요		
10	사업자등록증	X	제출필요		
11	법인등기부등본	X	법인만 해당	각각 분리하여, 저장 후 압축하여, & 3. 기타증빙 탭에 업로드	2021년~ 2023년
12	사회적경제조직 인증서류	X	해당시 제출		
13	비영리단체 대표 또는 임원 증빙		해당시 제출		
14	기타 증빙서류		해당시 제출		
15	결산재무제표	X	제출필요		
16	4대사회보험가입자 명부	X	제출필요		

* 제출기한 이후에 사업계획서 수정·보완·교체 및 추가 제출 절대 불가

** 발표자료는 심층인터뷰 대상자 별도 제출 안내 예정

5

심사 및 선정

□ **심사 절차:** 총 3단계 심사(서면→심층인터뷰→대면)를 통해 최종 선정

①요건검토	②서면심사	③심층인터뷰	④대면심사	⑤최종선정
자격기준 검토 및 서면심사 대상자 확인	사업계획서 심사 1.5배수 선정	대표자의 창업의지, 사업화실현 가능성 등 파악 대면심사 점수 20% 반영	사업계획서 기반 PT발표 및 질의응답	사업비 및 운영기관 배정 등 확정 및 최종 공고

※ 요건검토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및 운영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,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 사업참여제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 협약 해지

□ **심사방법**

- ① (요건검토) 제출된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
- ② (서면심사) 사업계획서를 평가(가점 포함) 하여 선정 규모의 1.5배수 내외를 고득점순을 선발, 심층인터뷰 대상으로 선정

< 서면심사 가점 대상 >

구분	대상자	점수	비고(제출서류 등)
가점 (최대 8점)	▪ 2022년~2025년 <u>도내 시·군 사회적경제지원 사업 참여자</u> 로 시·군의 추천서를 득한 자	3점	서식 3-1. 추천서 시·군 날인 필수 제출
	▪ 신청기업(팀) 대표자가 2022년~2025년 <u>도내 시·군 사회적경제교육과정(최소12시간 이상) 수료자</u>	5점	서식 3 시·군 발급 교육수료증 필수 제출
	▪ 신청기업(팀) 대표자가 2022년~2025년 <u>도내 시·군 사회적경제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나 교육시간이 12시간 미만인 경우</u> 부족한 시간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LMS 교육(GSIC클래스)으로 추가교육시간 인정	2점	① 서식3 시·군 발급 교육수료증 ② LMS교육 수료증 제출 ※ ①,② 모두 제출
	▪ 2023년~2025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LMS교육(GSIC클래스) 12시간 이상 시 수료시	2점	LMS교육 수료증 제출
	▪ 2023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비기너캠프 참가자	3점	수료증
	▪ 2023~2024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청년 임팩트메이커 창업캠프 수료팀	3점	수료증

* 가점 증빙서류 미제출 시, 가점 불인정(가점은 서면심사에만 적용)

- ③ (심층인터뷰)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및 운영기관 담당자 사전 심층 인터뷰를 통해 대표자의 창업의지, 사업화실현 가능성 등을 확인 및 대면심사 점수에 반영(20%)
- ④ (대면심사) 소셜미션, 창업아이템 경쟁력,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

종합적으로 평가(발표 5분, 질의응답 7분)

* 대면심사 시, 대표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

< 대면심사 가점 대상 >

구분	대상자	점수
가점 (최대 1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따른 경기북부지역 소재 기업(자) (고양시, 남양주시, 파주시, 의정부시, 양주시, 구리시, 포천시, 동두천시, 가평군, 연천군) 	1점

⑤ (최종선정) 대면심사 고득점사 순으로 운영기관·사업비 배정 완료 후 최종 선정 공고

*사업비: 대면심사 결과 및 사업계획서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

□ 심사지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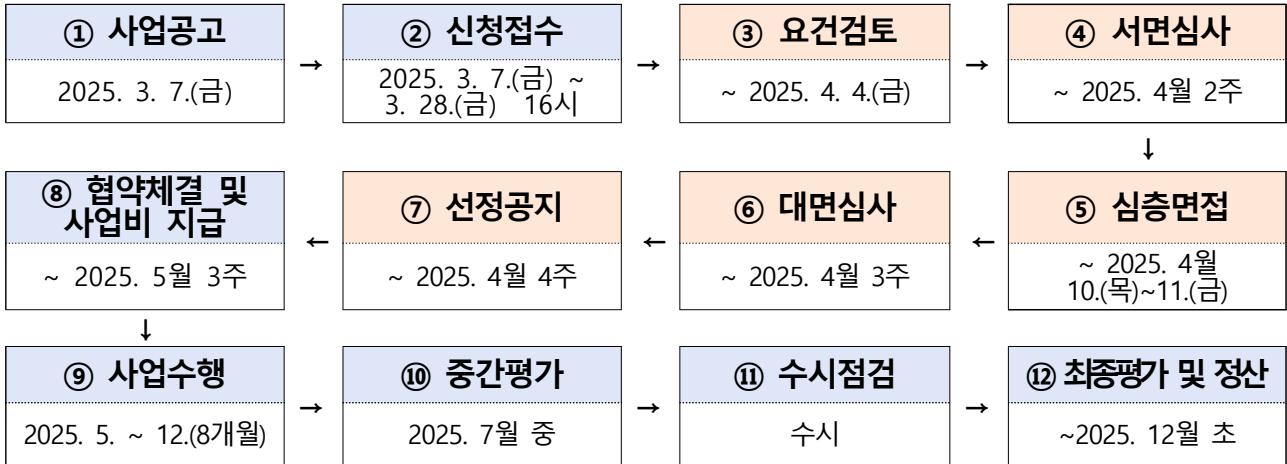
○ 요건검토 내용

구분	내용	검토결과
요건 검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고문 내 기재된 신청자격 부합 여부 	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 /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계획서 제출 여부 	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 /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청 제외 대상 여부 자가진단표 제출 여부 	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 /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필수 제출서류 3개이상 미제출 여부 	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 /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

○ 서면심사 및 대면심사 항목

구분	내용	배점
사회문제정의 및 핵심고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구체성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여 가능성 핵심고객 정의의 구체성 및 고객 확보 전략 	20
시장규모 및 경쟁자 분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장규모의 타당성 및 도입과정에서의 사회적가치 창출 가능성 현재 시장 내 경쟁사는 누구인가? 경쟁자 대비 차별성 및 경쟁우위 확보 여부 	15
창업아이템 (해결방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결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해결방안의 차별성 및 사회적 가치를 선도할 가능성 	15
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 가능성 및 운영 가능성 사업 실행을 위한 역량(인력, 네트워크, 경험, 자원 등) 보유여부 지원 후에도 추후 자립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? 	20
핵심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비즈니스모델 실현을 위한 인적·물적 자원의 보유 수준 및 사업의 도입·확산 가능성 	10
마일스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협약기간 내 사업진행 및 성공을 위한 계획 적정성 등 	10
기대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계획대로 사업 추진 시 미래에 성취할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인가? 해결책이 창출할 궁극적인 사회적·경제적 가치는 무엇인가? 	5
사업비 사용계획 (예산 타당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예산 설계의 타당성과 항목의 적절성 시장가격 대비 예산의 적정성 	5
합 계		100

□ **전체 운영일정** * 세부 일정은 대내·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

- 요건검토: ~2025. 4. 4.(금)
- 서면심사(결과발표 포함): 2025. 4. 7.(월) ~ 9.(수)
- 심층인터뷰: 2025. 4. 10.(목) ~ 11.(금)
- 대면심사: 2025. 4. 15.(화) ~ 16.(수)
- 최종선정: 2025. 4월 말(예정)
-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체결 : 2025. 5. 12(월) ~ 5. 13.(화) 예정

6 유의사항

1 신청자격 유의사항

- 사업자 2개 이상 보유 시,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나,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 가능

※ (참고) 가능 기준

-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·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하는 경우 (단, 창업기업이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에 한함)
- 비영리단체(법인 포함) 임원으로서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
- 개인사업자 중 부동산임대업 영위

-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 재창업 여부 확인을 위해 총사업자등록 내역,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
※ (참고) 이종·동종업종 판단 기준

- 한국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(5자리)를 기준으로 함(소분류 일치 시: 동종업종으로 판단)

*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: 통계청 통계분류포털(kssc.kostat.go.kr)-경제부문-표준분류-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-자료실-최신개정-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참고

② 신청 시 유의사항

-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사전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
-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, 인증(예비창업자: 휴대폰 본인인증, 사업자: 사업자번호 인증)이 가능한 본인(또는 신청기업)이 신청하여야 함

③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

- 고위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, 협약 해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-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사실확인 불가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,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,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
-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사업계획서 등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

④ 심사 중 유의사항

- 전 심사과정에서 (예비)대표자가 직접 심사에 참여하여야 함

⑤ 선정 후 유의사항

- 최종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협약기간 중 확인된 경우, 협약 해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- 사업부진, 사회적몰의 발생, 사업비 횡령 등 부정행위 발생 시,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- 협약기간 중 대표자와의 연락두절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, 협약 해지, 제재 및 환수조치 될 수 있음
- 선정된 기관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우리은행 보조금 계좌를 필수로 개설하고,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(회계처리)이 가능해야 함

-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「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」 고시에서 정한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, 과태료 부과 등 법위반 사실 확인 시(1회 이상) 평가 총점의 20% 감점 적용
 - (공정) ① 공정거래법, ② 하도급법, ③ 표시광고법
 - (노동) ④ 근로기준법, ⑤ 산업안전보건법
 - (환경) ⑥ 폐기물관리법, ⑦ 대기환경보전법, ⑧ 소음진동관리법, ⑨ 물환경보전법
 - (납세) ⑩ 국세기본법, ⑪ 지방세기본법
- 사업자 선정 후 협약서와 달리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과거 법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취소·보조금 반환(사업부서/수탁기관),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(기업육성과/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의뢰)

6 선정자 의무 및 역할

- 선정자는 「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사업 관리지침(운영 및 회계)」,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, 사업계획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함
- 선정자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(3년간 사후성과 등), 평가 등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밀착멘토링·특화 및 역량강화프로그램 등에 성실히 참여해야 함
-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 등 정당한 사유(경영부진(동분기 매출 60% 이상 감소, 사업자 양도, 인수합병 등)를 제외하고 협약종료일로부터 3년 간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

※ 동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
 ※ 이외 내용은 추후 배포될 「2025년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사업 관리지침(운영 및 회계)」을 적용함

- (총괄기관)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성장도약팀
 - (전화번호) 031-258-3282, 3283, 3285
 - (E-mail) gsic_impact@gsic.or.kr ※ 가급적 메일 문의 요망

구분		최종평가 지표				
예비트랙	예비창업자	완료	최우수	① 법인설립 and ② 시제품 구현 완료 and ③ 매출 또는 고용창출 and ④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준비(신청요건 적합) 완료		
			우수	① 법인설립 and ② 시제품 구현 완료 and ③ 매출 또는 고용창출		
			양호	① 법인설립 and ② 시제품 구현 완료		
			실패	① 법인 미설립 or ② 휴·폐업으로 인한 사업 유지 불가 or ③ 시제품 구현 불가 or ④ 필수 교육네트워크 프로그램 등 교육 미수료, 사업비 유용 등 제재사유 발생 시		
		성실실패	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, 대표자의 사망·천재지변·외부환경 변화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 완료에 실패한 경우			
		성장트랙	사회적경제기업	완료	최우수	① 법인유지 and ② 제품 구현(고도화) 완료 and ③ 지원사업비 20% 이상의 매출 또는 신규 고용창출 and ④ 지원사업비 이상의 투자유치
					우수	① 법인유지 and ② 제품 구현(고도화) 완료 and ③ 매출 또는 고용유지
					양호	① 법인유지 and ② 제품 구현(고도화) 완료
					실패	① 휴·폐업으로 인한 사업 유지 불가 or ② 시제품 구현 불가 or ③ 필수 교육네트워크 프로그램 등 교육 미수료, 사업비 유용 등 제재사유 발생 시
				성실실패	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, 대표자의 사망·천재지변·외부환경 변화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 완료에 실패한 경우	

구분		최종평가 지표				
성장트랙	사회적경제기업 진입희망 조직 (非사회적경제 조직)	이창 중업	완료	최우수	① 신규 이중업종 법인설립 and ② 시제품 구현 완료 and ③ 매출 또는 고용창출 and ④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완료	
				우수	① 신규 이중업종 법인설립 and ② 시제품 구현 완료 and ③ 매출 또는 고용창출 and ④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준비(신청요건 적합) 완료	
				양호	① 신규 이중업종 법인설립 and ② 시제품 구현 완료 and ③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준비(신청요건 적합) 완료	
			실패	① 신규 이중업종 법인 미설립 or ② 휴·폐업으로 인한 사업 유지 불가 or ③ 시제품 구현 불가 or ④ 필수 교육네트워크 프로그램 등 교육 미수료, 사업비 유용 등 제재사유 발생 시		
				성실실패		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, 대표자의 사망·천재지변·외부환경 변화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 완료에 실패한 경우
				동종 유지		최우수
		완료	우수	① (개인사업자) 신규 법인설립(개인사업자 폐업필요) (법인사업자) 법인유지 and ② 시제품 구현 완료 and ③ 매출 또는 고용창출 and ④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준비(신청요건 적합) 완료		
			양호	① (개인사업자) 신규 법인설립(개인사업자 폐업필요) (법인사업자) 법인유지 and ② 시제품 구현 완료 and ③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준비(신청요건 적합) 완료		
			실패	① (개인사업자) 신규 법인 미설립(개인사업자 미폐업) ② 휴·폐업으로 인한 사업 유지 불가 ③ 시제품 구현 불가 ④ 필수 교육네트워크 프로그램 등 교육 미수료, 사업비 유용 등 제재사유 발생 시		
		성실실패		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, 대표자의 사망·천재지변·외부환경 변화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 완료에 실패한 경우		

* 최종평가지표는 변경가능성 있음

※ 유의사항 ※

- 법인설립(유지) 기준은 경기도 내 법인설립(유지)임
- 모든 평가지표 내 성과는 협약기간 내 발생한 건만 인정함
- 실패(또는 성실실패) 시 사업비 전액환수,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지원 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